



2024년 강원대학교병원
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

2024년 08월

목 차

제 1 편 일 반 사 항

1. 개 요
2. 적용범위
3. 이 의
4. 담당책임자
5. 작업계획표
6.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
7. 완 료
8. 보안 및 비밀유지
9. 과업 기간

제 2 편 특 기 사 항

1. 일반기준
2. A/S 출동 체계 구축 및 소요 자재 등의 비치
3. 관리기준
4. 대가의 청구 및 지급 기준
5. 손해배상

일 반 사 항

1. 개 요

가. 건 명 : 2024년 강원대학교병원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

나. 과업 위치 :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길 강원대학교병원

다. 과업 대상

- 본원 삼성 제품의 시스템 냉난방기 총 357EA (실내기:272EA, 실외기:85EA)
 - 설치대수 총 664EA 중 행정부서 및 교수연구실부 제외
 - 본원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현황 표 중 유지보수 대상 노란색 음영 표기
- ※붙임1. 강원대학교병원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현황 1부.

라. 과업 목적

- 본 설명서는 “2024년 강원대학교병원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”에 대하여 적용하며, 용역의 계획에 따라 계약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고 한다.)가 수행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마. 과업 내용

- 1)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(EHP) A/S 및 정상 운영 : 부품비(콤프, 중계기포함)+기술료+출장비 포함
- 2) 월간 Service Report 자료 보고
- 3) 기타 담당책임자와 협의한 사항

바. 과업 기간 : 착수일로부터 1년

2. 적용범위

가. 본 설명서에 있어서 불명확한 사항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의 의견과 해석을 받아야 하며, 어구에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.

나.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후 시행하며, 점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다. 본 설명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대학교병원의 요구에 따르며, 이견이 있을 경우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다.

3. 이 의

본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,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,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책임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.

4. 담당책임자

본 설명서에서 담당책임자라 함은 본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,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본원에서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.

5. 작업계획표

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착수 전에 착수서류, 점검계획표, 참여기술자명단 및 자격사항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.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

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에 따라 작업 및 점검 장소 외에 다른 장소는 강원대학교병원의 승인 및 협조하에 출입하여야 한다. 안전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, 근로안전규칙, 근로보건관리규칙, 안전관리법,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하며,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.

위 사항 미준수 출입 및 작업 진행 시 강원대학교병원은 즉시 퇴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 시에는 형사, 민사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.

7. 완 료

계약기간 내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담당책임자가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완료할 수 있다. 완료계, Renewal 개선 계획 보고서, 완료검사원 등 담당책임자가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완료계 2부
- ② 완료검사원 2부
- ③ 기타 “담당책임자” 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일체

8. 보안 및 비밀유지

- 가.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담당책임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하고,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담당책임자와 협의하여 발간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
9. 과업 기간

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(365일)간으로 하되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특 기 사 항

1. 일반기준

- 가.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신속한 A/S 체계의 구축 및 운영으로 A/S 출동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 수행 이전에 담당책임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
- 라. 매월 대금 청구 시 월별 보고서 및 현장 수리(A/S) 사진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자재 및 부품 사용은 삼성전자의 정품을 사용하며, 필요 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고장 처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삼성전자 부품공급 업체이어야 하며, 유지보수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및 유지보수 지정 업체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. 유지보수 콜센터(24시간) 또는 이와 동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아. 기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2. A/S 출동 체계 구축 및 소요 자재 등의 비치

- 가.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「전담 엔지니어」를 지정, 운영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A/S 출동 체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모든 A/S 출동은 접수 2일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점검하여야 한다.(주간 근무시간 기준)
 - 점검 완료 및 고장 수리에 대한 A/S는 출동 접수 후 최대 4일 이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(단, 부품단종 및 기타 사유(천재지변) 등에 따른 초과 발생은 제외)
 -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A/S를 위한 모든 기기·자재·공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, 신속한 원상복구에 따른 강원대학교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(중요 부서의 자재는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)
 - 자재 상시 확보에 따른 관내 자재 비치 조건은 담당책임자와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.
 - 단, 관내 자재 비치 시 자재 고장 발생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측에서 처리하도록 한다.
- 다. A/S 출동 체계 미흡에 따른 귀책사유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손해를 입히거나, 최대 5일 이내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 단, 체계 미흡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라. 최종 고장 수리에 대한 A/S 기일(최대 4일)이 3번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5번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3. 관리기준

- 가. 유지보수에 사용된 부품 및 예방점검에 대한 비용은 당 계약건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나. 모든 부품/자재 및 경비는 별도의 청구 없이 무상으로 처리하며, 계약 외적 조건인 아래 항목은 실비 청구한다.
- * 실내기 및 실외기 사이의 배관 설비(Ex. 배관 내 냉매/오일 누설, 배관 파손 등)
 - * 실내기, 실외기 구매 및 교체 설치
 - * 삼성 GHP 기기 중 엔진 장애 건(엔진 교체 및 엔진 수리)
 - * 기타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한 사항
- 다.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의 교체,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담당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담당책임자의 승인없이 구조 및 회로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상대자 임의 변경에 의한 사고, 손실 발생 시 전액 보상/변상 한다.
- 로. 수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계약 외적인 수리를 요할 경우 별도의 견적으로 담당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.

4. 대가의 청구 및 지급기준

- 가. 계약은 총 금액 기준으로 계약한다.
- 나. 대가의 청구는 월별 분할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, 회계 규정은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에 따른다.(계약금액/12개월)
- 다. 유지보수 용역의 업무수행 미흡 및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이 지불해야 할 월 기성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※ 「국가계약법」 시행규칙 제75조 의거 월 보수금액의 1천분의 1.25 감액

5. 손해배상

- 가.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재산상의 손실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, 배상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강원대학교병원에게 재산상 손실이나 업무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.

붙임1) 강원대학교병원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현황 1부. 끝.